마약류중독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중독자]

이 콘텐츠는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마약류 범죄와 사법절차, 범죄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 재활 및 마약류중독 예방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약류중독자 1
1. 마약류중독자 알아보기 4
1.1. 마약류중독의 이해 4
1.1.1.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4
1.1.2. 마약 중독일까요? 7
2. 마약류 범죄 알아보기 11
2.1. 마약류 범죄 처분 11
2.1.1. 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11
2.1.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처우 21
2.2. 마약류 범죄 예방 25
2.2.1.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신고 25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8
3.1. 마약류중독자 치료 지원 28
3.1.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28
3.2. 마약류중독자 재활 지원 31
3.2.1. 마약류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31
4. 마약류중독 예방하기 33
4.1. 마약류중독 예방교육 등 33
4.1.1.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의 예방 33

1. 마약류중독자 알아보기

1.1. 마약류중독의 이해

1.1.1.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마약"이란 무엇인가요?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출처: 검찰 홈페이지-검찰활동-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마약이란 참조].

>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
>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
> ②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
> ③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
> ④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진료분야-약물중독 참조>

▪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마약류"란?

▪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 분	내 용

마약	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2.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3.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4.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 (예)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코데인 등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것 (예)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등	
	6.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한외마약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것 (예) LSD,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사일로신 등
	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것 (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3. 위 1.과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것 (예)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등
	4.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것 (예) 졸피뎀, 지비에이치비(물뽕), 날부핀 등
	5.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
대마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위 1. 또는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것
	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어요.

임시마약류의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1항).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2항).

-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임시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임시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아래 4.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3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마약 중독일까요?

마약류(약물)중독 알아보기

“마약류(약물)중독”이란?

▪ “마약류(약물)중독”이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의학적, 경제적, 법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더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약물)의 효능에 의존하여 강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및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참조].

▪ 또한 마약류(약물)중독은 심장질환과 같은 다른 질병과 유사하게 조직(기관)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을 방해하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평생 지속되는 질병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진료분야-약물중독 참조].

> ※ **"약물"이란?**
> ▪ **"약물"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 콘텐츠에서는 통념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구 분 | 내 용 |
> |---|---|
> | 의학적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물질 혹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의약품 또는 치료제를 말함 |
> | 약리학적 | 신체 조직이나 유기체의 생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을 바꾸는 화학적 매체 |
> | 통념적 | 비의료적인 목적(오락, 환각, 행복감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 |
>
> **[출처: 중독 바로알기-예방 정보마당-중독용어 정의 참조]**

마약류(약물)의 사용

▪ 마약류(약물)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출처: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이란-마약(약물중독)].

구 분	내 용
약물오용	의도적은 아니지만,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
약물남용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약물의존	마약류 및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자에게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태
약물중독	약물의 노예가 되어 약물이 없이는 지내기가 괴로운 상황이 되어 계속 약물을 찾게 되며,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오심, 구토, 두통, 복통에서부터 들뜬 기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혼수상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마약류(약물)중독의 증상

▪ 마약류(약물)중독은 약물의 부정적이고 위해한 결과를 알면서도 약물에 사로잡혀, 강박적으로 약물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는 만성적 뇌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중독자들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진료분야-약물중독 참조].

▪ 마약류(약물)의 남용은 기분, 사고와 판단, 감각적 지각 및 행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중독 바로알기-예방 정보마당-약물(마약)류 분류 및 증상].

구 분	내 용
기분	▲경계심을 더 느낌 ▲더 이완된 느낌 ▲더 사교적으로 느낌 ▲'행복'을 느낌 ▲짜증이나 화가 남 ▲'두려움'을 느낌 ▲평소보다 다소 우울함
사고와 판단	▲질주하는 생각이 듦 ▲생각이 더 명료해짐 ▲계획/결정을 하지 못함 ▲왜곡된 지각 ▲편집증적 사고 ▲잘못된 판단
감각적 지각	▲지각적 왜곡 ▲온도 지각 변화 ▲통증 지각 변화
행동	▲감소/증가된 활동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 ▲위험 행동의 증가 ▲수동적 ▲공격적/폭력적 ▲감소/증가된 성행위

마약류(약물)중독의 진행단계

▪ 마약류(약물)중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중독 바로알기-예방 정보마당-중독의 진행].

구 분	내 용
① 실험적/여가용 사용	가장 낮은 순위 친구들과, 즐거움, 호기심으로 사용
② 상황적/간헐적 사용	원하는 욕구 충족 사회적, 쾌락 도구
③ 심화된/정기적 사용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사용 사회적, 직업적 문제 발생 남용으로 간주
④ 강박적/중독적 사용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 금단증상을 피하기 위해 사용 물질이 삶의 중요한 부분 문제를 알면서도 끊지 못함 중독으로 간주

마약류(약물)중독 상담 및 진단

마약류(약물)중독 상담

▪ 마약류 중독, 약물남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간 상담센터): ☎ 1342

· 대면 상담: 상담시간 예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대면상담

· 온라인 상담(메타버스 상담): 상담시간 예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소속 상담사와 메타버스 내 상담실에서 상담

[출처: 마약청정 대한민국-상담-상담 신청 참조]

마약류(약물)중독 진단

▪ 마약류 사용 경험과 노출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마약청정 대한민국(https://nodrugzone.mfds.go.kr)-상담-자가진단

[출처: 마약청정 대한민국-상담-자가진단 참조]

2. 마약류 범죄 알아보기

2.1. 마약류 범죄 처분

2.1.1. 마약류 범죄의 유형 및 처벌

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독”입니다.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

▪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76쪽 참조).

- 전체 : **중독(21.3%)** > 유혹(11.5%) > 영리(9.8%) > 호기심(7.5%) 순
- 마약사범 : 우연(9.8%) > 유혹(9.2%) > 호기심(8.6%) > 중독(3.8%) 순
- 향정사범 : 중독(23.1%) > 유혹(11.8%) > 영리(11.4%) > 호기심(6.4%) 순
- 대마사범 : 중독(21.7%) > 호기심(12.9%) > 유혹(11.1%) > 영리(5.2%) 순

[표 3-10] 2024년 범죄원인별 단속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원인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합계	11.5	1.4	0.1	21.3	7.5	9.8	0.9	47.5	100.0
마약	9.2	9.8	0.0	3.8	8.6	3.0	1.9	63.8	100.0
향정	11.8	0.7	0.1	23.1	6.4	11.4	0.9	45.6	100.0
대마	11.1	0.6	0.1	21.7	12.9	5.2	0.6	47.9	100.0

[그림 3-10] 2024년 범죄원인별 구성비



<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76쪽>

마약류 범죄 유형

▪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 및 단속되고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66쪽 참조).

※ 2024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마약류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66쪽>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의 2차 범죄

▪ 마약류 투약 후 ①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② 무차별적인 폭력·난동, ③ 성폭력 범죄, ④ 교통사고 및 ⑤ 방화 등 환각 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2023. 9. 13.), 호기심으로 시작, 파멸로 끝나는 「악마의 약」 참조).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③ 공무·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 마약 투약 사례

1.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사례
2. 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거나 몰래 투약한 사례
3. 주거지에서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한 뒤 제조, 판매 및 투약한 사례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12. 19.),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참조>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나목)· 향정(다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향정(라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향정(마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대마 등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향정(가목) 원료식물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2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마약류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7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각 용어는 다음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향정(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마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원료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1군 임시마약, 2군 임시마약)

Q. 마약 목적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키우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관상이든 민간요법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마약성 식물 재배는 불법입니다. 양귀비나 대마 같은 작물을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경찰청-홍보콘텐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나 공무·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참조).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

▪ 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영리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상습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나목) 향정(다목)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향정(가목) 원료식물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6호	

향정(라목)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등	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유인·권유·알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2군 임시마약류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하게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1항	2년 이상 징역

Q.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비약(식욕억제제)을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카드뉴스>

마약류 수출입·제조 또한 엄중히 처벌됩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등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및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나 공무·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

▪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법정형
마약, 향정(가목·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상습 수출입·제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향정(나목)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1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8호	
대마	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대마	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다목)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0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 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초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1호	

향정(라목)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마약류 대량 밀수입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대량범에 대한 가중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처우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대상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중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보호관찰

▪ 피치료감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함)이 시작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위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치료감호의 종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위탁되어 보호관찰이 시작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치료명령제도”란?

-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치료명령대상자”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3호).

- 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마약류사범으로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마약류사범”이라 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제4항).

※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보호관찰 참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도 종료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마약류사범은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3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5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7항).

-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걸음센터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걸음센터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재활/상담/교육-중독재활센터-재활교육].

· 중독자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사례관리)

· 단기교육 프로그램(중독자·가족 대상 프로그램)

· 재활 교육(마약류사범의 사법적 의무교육 등)

· 타 기관 연계(치료보호기관/입소시설/지역 내 유관기관)

2.2. 마약류 범죄 예방

2.2.1.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신고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 알아보기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

▪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으로는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②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③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④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출처: 대구서부경찰서-카드뉴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 의심사례

▪ ①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한 경우, ②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경우, ③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 ④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등은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카드뉴스, 경찰청(www.police.go.kr)-홍보콘텐츠 및 검찰(www.spo.go.kr)-검찰발표자료 참조].

마약류 범죄 신고기관

▪ 마약범죄 의심 또는 발견 시 공소청(☎국번 없이 1301), 경찰청(☎112) 및 관세청(☎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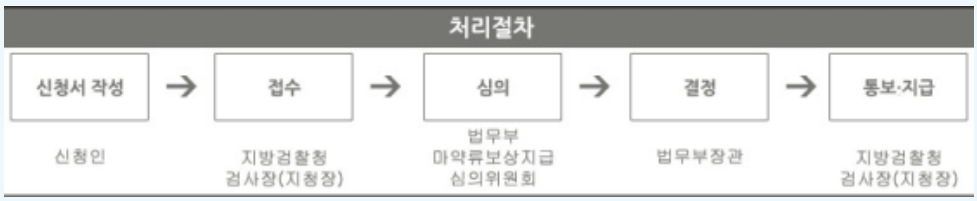
▪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 이하 같음)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1항).

▪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참조).

▪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제2항).

※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공소청 홈페이지(www.spo.go.kr)-공소청 활동-주요수사활동-마약범죄수사].



마약류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1항).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4항).

▪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은 위의 보상금 상한액 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3항).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27. 개정·시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 추가됐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반행위를 공익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2. 13.),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참조>

※ 마약류 범죄 등의 공익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3.1. 마약류중독자 치료 지원

3.1.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란?

▪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

▪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항).

-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24.10월말 기준)

지역 \ 구분		병원명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5	02-300-8114
	광진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대전	중구	*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용인시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269-5665
	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637-7400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1	032-321-1433
강원	원주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741-0114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전북	익산시	*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주	제주시	* 연강참병원	2	064-759-9641
합계		31개 의료기관	341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출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2024. 10.)>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 의뢰·신청

▪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 또한,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신청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판별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 등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게 한 후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판별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및 제11항).

판별검사의 기준

▪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1항).

▹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다만,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2항).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치료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보호의 의뢰·신청

▪ 검사는 중독자 등에 대해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 또한,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 등에 대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

▪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치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신청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제1항).

▪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정해진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1항).

▪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2항).

▹ 다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 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총 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3항).

치료보호의 종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1항).

▹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보고받은 경우

▹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거나 검사의 요청으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4항).

3.2. 마약류중독자 재활 지원

3.2.1. 마약류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유·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2호).

함께한걸음센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발굴 및 진단(중독수준평가)하여 개별상담(심리, 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교육 등),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중독재활센터/상담-

중독재활센터-중독재활센터].

▪ "함께한걸음센터"는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한걸음1342(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통해서는 24시간 전화상담(☎ 1342)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

-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관련기관-기관소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그 밖에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 시·도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하여 마약퇴치의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의 날

▪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4. 마약류중독 예방하기

4.1. 마약류중독 예방교육 등

4.1.1.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의 예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1호).

▪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②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③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④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제1항).

>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온·오프라인 교육(edu.drugfr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제1항).

>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자료 등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

▪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4. 26.), '출구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참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마약류 투약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자목).

▪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프로포폴(Propofol)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프로포폴(Propofol)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질병·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및 별표).

▹ 효능군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구분	조치사유	비고
식욕억제제1)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만 16세 이하/ (복합제) 만 18세 미만	
진통제2) ※ 주사제 및 경피흡수제(패치제)는제외함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암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4)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외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항불안제3)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1) 식욕억제제(4개 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진통제(13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올리세리딘
3)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4)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중 G90.5(CRPS Ⅰ형), G90.6(CRPS Ⅱ형), G90.7(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CRPS)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확진받은 경우에 한함

▹ 성분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구분	조치사유	비고
졸피뎀 (최면진정제)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마취제)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암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1)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외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1)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중 G90.5(CRPS Ⅰ형), G90.6(CRPS Ⅱ형), G90.7(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CRPS)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확진받은 경우에 한함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